

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(MB) 수출 관련 안내문

○ 수출 가능한 마스크 MB : 보건용 마스크 MB

※ 수술용 마스크 MB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 MB의 경우 수출 금지

○ 수출자

- 보건용 마스크 MB 생산업자
- 수출을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MB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

○ 수출 가능 물량 :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급 상황 및 생산업자별 생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로 정한 수량 ('20.8.6. 수출신고 건부터 적용)

- 업체별 배정된 수출가능 물량은 전자신고시스템 생산·판매실적 신고 화면에서 매월 1일(8월의 경우 18일) 확인 가능
- 수출 물량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수량 이내인지 확인을 위해 한국섬유수출입협회로부터 수출허용량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(제정고시 제6조제4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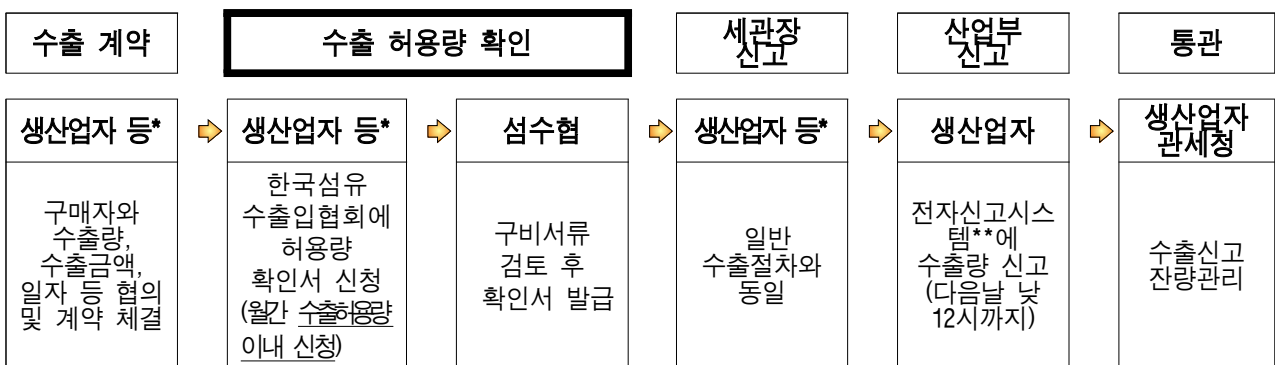
(확인서 발급 구비서류)☞ 세부 절차 등 전자신고시스템 참고

- 보건용 마스크 MB 수출 허용량 확인 신청서
- 생산업자와의 계약서 사본(수출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MB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에 경우 해당)

※ 다만, 보건용 마스크 MB 생산업자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 가능 물량을 초과하여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 승인 필요

○ 수출 가능 국가 및 목적 : 제한 없음

○ 수출 절차



* 생산업자 등 : 보건용 마스크 MB 생산업자, 수출을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MB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

** 전자신고시스템 : MB.techtex.or.kr

○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

- 무역서류(상업송품장, 포장명세서 등)
- 한국섬유수출입협회장 발행 수출허용량 확인서

○ 문의처 : 한국섬유수출입협회 첨단소재지원팀 또는 산업부 섬유탄소나노과
(Tel. 02-6284-5012 , 044-203-4281 또는 4289)